

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

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-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7일
국무조정실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☐ 채용분야(행정)

응시번호	성명(생월일)	응시번호	성명(생월일)
5	황○영(0905)	6	윤○민(1015)
7	정○영(0112)	8	박○현(0901)
12	김○지(0322)	15	김○연(0323)
18	원○은(1111)	19	이○정(0527)
22	남○희(0406)	23	송○정(0124)
28	한○림(0705)	38	배○영(1003)
39	이○길(0219)	40	이○훈(0516)
44	우○영(0217)	45	이○민(0813)
47	이○현(1017)	49	길○숙(1218)
50	윤○영(0405)	59	조○빈(1105)
68	손○명(0315)	69	이○준(0127)
71	원 ○(0615)	76	김○환(0301)
77	한○희(0109)	78	조○진(0406)
79	이○훈(0606)		

☐ 채용분야(홍보)

응시번호	성명(생월일)	응시번호	성명(생월일)
1	박○빈(0328)	2	이○원(0917)
3	장○영(1217)		

2. 면접전형 일정

- (일시) '24.4.2.(화) 14:00 부터
- (장소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, 정부세종청사 1동(국무조정실)
 - * 출입증을 교환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인솔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,
면접시작 20분 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1-2 출입구 안내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.

3.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안내
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지 1·2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,
3월 29일(금)까지 e-mail로 제출바랍니다.
 - e-mail: opminsa@korea.kr
 - ※ <별지2호>의 경우, 상단의 “채용기관”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시고, 나머지 내용만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4. 유의사항

- 면접 대상자는 **면접 당일 신분증을 지참**하시기 바랍니다.
-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**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**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※ 문의 : 국무조정실 인사과(☎044-200-2801)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 (서명)

국무조정실장 귀하

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8호 서식]

- 해당하는 []에 $\checkmark$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이
한
지

(서명 또는 인)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